

# 「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변경 시행」에 따른 안내

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
2012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발급건의 승인번호, 승인(발급)일자, 취소사유(1:거래취소, 2:오류발급, 3:기타)를 추가 입력해야만 정상적으로 취소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시행됩니다.

따라서 단말기, POS 등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수정하시어 변경된 방법으로 현금 영수증을 취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,

소비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계산대,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

\*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신용카드뱅크(현금영수증사업자), 신용카드단말기 설치대리점, POS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현금영수증 취소 관련 규정

### ●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(2012-5호)

제1조(현금영수증의 교부) 제2항(신설)

-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, 승인일자,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.

### 변경된 현금영수증 취소방법

- 현금영수증 취소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단말기 제조사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\* 단말기 취소 버튼 → 현금영수증 버튼 → 휴대폰번호 등 신분인식수단 → 취소금액 → (변경 후) 당초 거래 승인번호 → 승인일자 → 취소사유(1:거래취소, 2:오류발급, 3:기타)

### 당초 승인번호 조회방법 (발급일자와 발급금액만 아는 경우)

- 세미래콜센터 ☎126(내선 2)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당초 거래 승인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\* 콜센터 ☎126 → 2. 현금영수증 → 1. 한국어 → 1. 자동조회서비스 → 사업자는 사업자번호, 소비자는 주민번호 인증 → 4. 현금영수증승인번호 조회 → 발급일자, 발급금액 입력

###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시 안내사항

- 현금영수증 취소는 당초 현금영수증 발급 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시 소비자에게 취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
-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임의 취소는 「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」 제4조 금지행위에 해당되며,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동일하게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.
- \* 임의취소 시 취소금액의 5% 가산세와 과태료 부과

2012. 5

세무서장(관인생략)

궁금하신 내용은 세미래콜센터 ☎126(내선2: 현금영수증상담)로 문의